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491호 2019. 8. 2. (금)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820호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
- 정선군 공고 제2019-834호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4
- 정선군 공고 제2019-836호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2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820호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 활동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회의 구분(정기, 임시) 및 소집시기 규정 (안 제2조)
- 나. 협의회 심리전 담당 간사 추가 (안 제2조)
- 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신설 (안 제4조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 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안전과
문화예술회관 2층
- 2) 전화 : 033-560-2266
- 3) 팩스 : 033-560-2174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접수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를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로,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을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를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제536기무부대” 를 “제7안보지원대”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의 회의는” 을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하며,”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행정과장” 을 “정선군청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심리전담담당 간사: 정선군청 공보업무 담당부서장

제2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제2조제6항제2호 중 “정선군민방위협의회<본조제목 및 전문개정 2011.06.15>” 를 “지역민 방위협의회” 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3항의 규정” 을 “제5조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조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취약지역 대비책

제3조제3호가목 중 “유지와 관련된” 을 “유지에 관한”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참가하는” 을 “참가한” 으로, “유대강화와 관련된” 을 “유대강화에 관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안전 <각호 전부개정 2007.02.15>” 를 “안전” 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상황실의 실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 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지

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8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읍·면장 소속으로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읍·면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며, 상황실장은 총무담당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업무담당주사 또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제4조제3항을 따른다. 다만, 읍·면의 실정에 따라 상황요원과 분야별 지원반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의3(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정선군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책임하에 운영하고,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동원과장으로 하며, 반원은 군·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제1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u>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u> 및 정선군·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u>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u>) ①<u>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u>(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u>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u>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u> ----- ----- ----- - <u>필요</u>----- -----. 제2조(<u>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u>) ①<u>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u>----- ----- ----- ----- ----- ----- -----. ②-----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6. (생략)

7. 제536기무부대 정선군관계관

8. ~ 10. (생략)

③ (생략)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 : 행정과장

2. ~ 4. (생략)

<신설>

⑥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정선군방

-----.

1. ~ 6. (현행과 같음)

7. 제7안보지원대 -----

8.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하며, -----.

⑤-----

-----.

1. -----
-- 정선군청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

2. ~ 4. (현행과 같음)

5. 심리전담당 간사: 정선군청 공보업무 담당부서장

⑥-----

-----.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정선군민방위협의회<본
조제목 및 전문개정 2011.06.1
5.>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통합
방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나. (생 략)

<신 설>

다. (생 략)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 운영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
의 설치 및 유지와 관련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와 관련된 사항

4. ~ 6. (생 략)
7.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

2. -----

-- 지역민방위협의회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

---- 제5조제3항-----

-----.

1. (현행과 같음)
2.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현행 다목과 같음)

3. -----

가. -----

----- 유지에 관한 --

나. -----

참가한 -----

----- 유대

강화에 관한 ----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는 안건 <각호 전부개정 2007.02.15.>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정선군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지원반, 인력·재정지원반, 산업·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이상 8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선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실장은 기획실장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 또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

③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읍·면의 실정에 따라 상황요원과 분야별 지원반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 안건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상황실의 실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 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8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본부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상황실장은 총무담당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업무담당주사 또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

⑤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4조의2(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읍·면장 소속으로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 지원본부" 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며, 상황실장은 총무담당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업무담당주사 또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제4조제3항을 따른다. 다만, 읍·면의 실정에 따라 상황요원과 분야별 지원반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의3(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법 제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정선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⑤ (생략)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3.03.12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5.12.23.>>

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 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정선군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책임하에 운영하고, 합동 상황실장은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동원과장으로 하며, 반원은 군·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 제8조제3항에 따라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1. 통합방위법

○ 제5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

⑤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2. 통합방위법 시행령

○ 제7조(중앙협의회회의 소집 등)

② 중앙협의회회의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지역협의회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② 지역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항을 준용한다.

○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 제1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② 합동상황실은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공고 제2019-834호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강원랜드 주변지역 불법 조직이 가담한 자가용자동차 및 대여자동차의 유송운송 행위와 타 지역택시의 불법적인 영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고 포상금 상향조정 (안 제2조 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19. 8. 1. ~ 8. 20.(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안전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안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131), 팩스(033-560-2174)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안전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40만원”을 각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의2 중
“2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신고 및 포상)①·② (생략)	제2조(신고 및 포상)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u>40만원</u>	1. ----- <u>50만원</u>
2. 대여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u>40만원</u>	2. ----- <u>50만원</u>
3.·4· 5. (생략)	3.·4· 5. (현행과 같음)
5의2. 다른 지역택시 밤샘주차 행위: <u>2만원</u>	5의2. 다른 지역택시 밤샘주차 행위: <u>7만원</u>

관계법령 발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5조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22.]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예방 및 교통·기초질서 계도 등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공익행사 봉사에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정선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서 운영의 내실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조직 구성 및 활동, 사업,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감독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19. 8. 1. ~ 8. 20.(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안전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안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64), 팩스(033-560-2174)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안전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선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선군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정선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 구성 및 활동) 정선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선군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2.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3. 교통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4.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의2의 지원 내역은 제외한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홍보활동 사업비
3. 그 밖에 선진교통질서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

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때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때에는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표창)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또는 회원에게 「정선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모범운전자회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붙임 1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 중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1.]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본조신설 2012.3.21.]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 [전문개정 2013.6.28.]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 모자, 근무복, 점퍼 등
2. 장비: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9.7.]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본호신설 2018.11.12.]